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6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6.
3. 회부연월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옥외광고물로 표시·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매립할 때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내부에 잔류하여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3(친환경 현수막 지원) 시·도 지사와 시장등은 친환경 소재(「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 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제작한 현수 막을 표시·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으로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PET) 소재로 제작되어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매립시에는 분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폐현수막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폐현수막의 재활용 방법으로는 재활용 원사, 토목·공업용 부직포, 업사이클링 제품¹⁾ 제작 등이 대표적임.

최근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폐현수막 발생량 대비 재활용 수요처가 적고 재활용 비용이 높아 전체 폐현수막 중 재활용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으로 소각 또는 매각 방식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더 높은 실정임.

<최근 3년간 폐현수막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단위: 톤)

구 분	발생량	재활용	재활용률(%)
2023년	6,130	1,817	29.6
2024년	5,408	1,801	33.3
2025년	4,971	2,418	48.4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이에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1)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원래의 디자인이나 용도가 아닌 새로운 디자인이나 용도의 제품으로 바꾸어 재활용하는 것으로, 세척 등을 통해 원래의 형태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과 구분됨. 폐현수막의 경우 가방, 파우치, 장바구니, 돛자리, 우산 등으로 제작·사용되고 있음.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우선적으로 게시²⁾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운영하며 공공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³⁾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있음.

제22대 국회에서도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적된 바 있고,⁴⁾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에 대하여 생분해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050호)」이 발의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2) 「과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과주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3)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① 김해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할 현수막

4. 지방보조사업자가 김해시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현수막

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게시대의 지정 수, 위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제22대국회 제429회 (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25.11.20.)
제22대국회 제429회 (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1.27.)

으로써 현수막 제작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당시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조건⁵⁾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생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고려할 때, 친환경 소재의 정의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현수막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하나,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관련 규정상 제품의 제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표지 제도의 취지상 소모성·단기사용성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대상에 포함하지 않거나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환경영향 저감형 소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60도 고온에서 습도 80% 조건에서만 분해됨

한편, 대구광역시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법적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역 간 형평성 또는 친환경 검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350